

2009-26 | 책임연구보고서

경찰관기동대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9-26 | 책임연구보고서

경찰관기동대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사회안정대책연구실

경찰연구관 선 승 석

목 차

| | |
|------------------------------|----|
| I . 서 론 | 1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 가. 연구 배경 | 1 |
| 나. 연구 목적 | 3 |
| 2. 연구방법 | 3 |
| II . 경찰관 부대 현황 | 5 |
| 1. 경찰관 부대 설립 연혁 | 5 |
| 가. 2008년 이전의 경찰관 부대 | 5 |
| 나. 2008년 이후의 경찰관 부대 | 5 |
| 2. 경찰관 부대 현황 | 7 |
| 가. 편제, 임무, 인사 | 7 |
| 나. 근무 및 교육훈련 | 11 |
| 다. 장비운용 | 14 |
| 라. 경찰관기동대 복지 | 19 |
| 3. 경찰관기동대 운용 현황과 문제점 | 21 |
| 가. 집회시위관리, 혼잡, 재해경비 업무 | 21 |
| 나. 각종 단속 등 민생치안 근무 지원 | 22 |
| 다. 복무, 인사, 복지 등 | 23 |
| III . 경찰관기동대 효율적 운용방안 | 25 |
| 1. 철저한 집회시위 분석 및 대비 | 25 |

| | |
|------------------------------------|----|
| 2. 민생치안업무에 무리한 동원 지양 | 26 |
| 3. 교육훈련 강화 및 업무지원프로그램 개발, 운용 | 27 |
| 4. 장비 개발, 운용 | 28 |
| 5. 기타 복무관련 개선 필요사항 | 29 |
| 6. 경찰관기동대 홍보 강화 | 30 |
| IV. 결 론 | 31 |
| 참 고 문 헌 | 32 |
| 첨부자료1 : 경찰관기동대원 체력검정기준표 | 33 |
| 첨부자료2 : 체력검정 개인별 기록카드 | 35 |

표 차례

| | |
|--------------------------------------|----|
| <표 1> 경찰관기동대 편제표 | 8 |
| <표 2> 경찰관기동대 정원표 | 8 |
| <표 3> 경찰관기동대 선발시 연령기준 | 10 |
| <표 4> 경찰관기동대 심사대상별 인사위원회 설치 기준 | 11 |
| <표 5> 혹서기 훈련 기준 | 12 |
| <표 6> 혹한기 훈련 기준 | 13 |
| <표 7> 경찰관기동대원 적응훈련 프로그램 | 13 |
| <표 8> 경찰관기동대 집회시위관리장비 확보기준 | 15 |
| <표 9> 경찰관기동대 기타 장비 확보기준 | 16 |
| <표 10> 여경기동대 장비확보 기준 | 17 |
| <표 11> 경찰관기동대 청사 기준모델 | 20 |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2007년 2월 5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정부합동브리핑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의경을 매년 20%씩 감축하여 2013년에는 완전히 폐지할 것을 발표¹⁾하였다. 그러면서, 감축되는 전의경 대신 전의경 인력의 30%를 경찰관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경비국 산하에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전의경경찰관대체TF팀」을 창설하였다. 4만6천여명의 전의경을 6년간 1만4천여명의 경찰관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과 추진 방안을 연구하고 하나씩 실행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라는 기조아래 전의경 감축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가 모여 다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논의의 초점은 1만4천여명이라는 경찰관 증원은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논의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결국 ‘전의경 감축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전의경 감축속도를 완화시키고 전의경 감축이 줄어드는 만큼 경찰관 충원도 줄이는 방안’이 결정²⁾되었다.

1) 2+5전략 책자, 정부합동브리핑, 2007.2.5

2) 결정 당시, 작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1만4천여명의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우며, 전의경을 대체하여 경찰관으로 충원시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경찰관 충원 인력이 조정되었다는 기사들을 볼 수 있다. “전의경 폐지해 말아 계속되는 표류 상태”, 연합뉴스 인터넷판, 정치면, 2008.11.11 등 참조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08년에는 전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이후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이라 함)이 1,408명이 충원되었고, 2009년에는 1,206명이 충원되었으며, 2010년에는 1,260명을 충원³⁾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보다는 작은 인원이지만, 전의경 대체 경찰관이 충원됨으로 인해 이 인력에 대한 운용계획이 경찰청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 전의경이 감축되면서 전의경 부대의 수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부대가 부족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2008년에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의경 부대는 매일 동원되어 제대로 쉬지도 못할 형편이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집회시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전의경 대체 경찰관을 경찰관 부대 창설에 활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2008년 7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력으로 구성된 경찰관 부대가 창설되기 이르렀다. 부대 창설 당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1980년대 경찰에서 운용했던 경찰관 부대에 빗대어 ‘백골단 부활’이라는 비난을 쏟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경찰관 부대를 기존에 운영하여 왔으며, 1980년대와는 달린 시대상과 경찰의 위상, 법집행 능력, 실제 경찰관 부대의 임무 등을 살펴 보았을 때 이는 과도한 비판이며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2008년에 창설된 경찰관 부대는 성공적으로 경찰 조직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2009년에도 경찰관 부대가 창설되었으며 현재 각종 경찰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2008년 이전에도 경찰에서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를 운용 중

3) 전의경 대체 경찰관으로 선발되는 인력은 대부분 새로 창설되는 경찰관 부대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되고 있으며, 이중 20%는 전의경 전역자 특채 즉 전의경 전역자 출신으로 구성하고 있다.

2011년 이후에 대한 경찰관 충원은 추후에 결정될 예정으로 2011년에 전의경 감축 인원이 아직 미정으로 정확한 경찰관 충원 인원도 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 있었다.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적어 치안업무 전반에 활용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그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경찰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중요해 진 것이다.

전의경 인력은 급격히 감축되고 이에 따라 부대가 해체되고 있다. 반면, 경찰관 인력은 전의경 감축 인력의 30%만 충원되어 줄어드는 부대만큼의 창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 부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설되고 있는 경찰관 부대의 ‘인사체계, 배치체계, 구성체계, 근무방법, 운용방법, 장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관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새로 창설된 경찰관 부대가 일부에서 비판하고 있는 1980년대의 ‘백골단’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전의경 감축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해 진 상황에서 신설되는 경찰관 부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소수의 인력으로 최대의 치안서비스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번 연구보고서는 우선, 경찰관 부대와 관련된 경찰청의 각종 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의 경찰관 부대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그 이유와 효과 등을 분석할 것이다. 더불어, 경찰에서 기존에 제정 운용중인 경찰

기동대운영규칙 등을 살펴보고, 경찰관 부대 창설이후 새로 제정된 경찰관기동대운영규칙과 그에 대한 업무편람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또한, 현재 경찰관 부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지 규칙과 실제상의 괴리는 없는 지, 경찰관 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 규칙의 개정이나 편람의 개정사항은 없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와 또 한계는 없는 지에 대해 알아 본다.

또한, 향후 계속하여 신설되는 경찰관 부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경찰의 각종 치안업무에 경찰관 부대가 활용가능한 지 살펴보고, 각각의 분야에서 경찰관 부대가 해야할 임무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관 부대의 사기진작 방안, 교육, 홍보 등 경찰관 부대의 지원과 행정적인 문제의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 연구토록 하겠다.

II. 경찰관 부대 현황

1. 경찰관 부대⁴⁾ 설립 연혁

가. 2008년 이전의 경찰관 부대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경찰관 부대는 2008년 전의경 대체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가 창설되기 전부터 이미 경찰 조직에 존재해 왔다. 2008년 이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단⁵⁾ 아래 특수기동대 산하 경찰관 부대가 3개 운영되고 있었다. 각 부대는 중대 규모의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2000년에는 여자경찰관으로 구성된 98체대를 상설 부대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경찰관 부대는 주로 대규모 집회시위 관리 업무와 경호업무에 동원되었고, 특히 여경 체대는 집회시위 참가자가 여성이 많을 경우 상당한 역할을 해 주었다.

앞서 말한 부대 이 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청와대경비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 부대가 있다.

나. 2008년 이후의 경찰관 부대

국방부는 경찰청이 적정 전의경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년 전의경 인력을 경찰청에 배정해 왔다. 하지만, 전의경 감축계획이 수립되면서,

4) ‘경찰관 부대’라는 명칭과 관련, 현재 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의 명칭에는 ‘경찰관 기동대’, ‘체대’가 쓰이고 있다. 본 연구 보고서에는 이를 통칭하여 경찰관 부대라고 명칭하기로 한다. ‘경찰관 기동대’ 및 ‘체대’라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추후 살펴볼 것이다.

5) 2008년 이후에는 ‘기동본부’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매년 배정하는 전의경 인력을 2008년부터 감축하기 시작하였다. 2008년의 경우 배정 인력의 20%를 감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의경을 운용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인력 감축이나 부서의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전의경 인력 감축에 따라 전의경 부서의 구조조정을 시작해 행정부서 등 전의경 인력을 감축하고, 전의경 부대도 해체하기로 결정⁶⁾하였다. 이렇게 해체되는 전의경 부대를 대신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의경 대체 경찰관’으로 경찰관 부대를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전의경 대체 경찰관 1,408명을 2007년 선발하였다. 이들이 신입 교육과정을 마친 2009년 7월 신입 순경들이 주축이 된 경찰관 부대가 창설되기에 이른다.

2008년에는 총 13개 부대가 창설되었는데, 기존에 있던 4개 경찰관 부대(특수기동대 3개, 여경 제대 1개)도 창설되는 부대에 맞게 재편되었다. 그리하여 경찰에서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2개)와 함께 총 19개 경찰관 부대를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9년에도 전의경 감축과 경찰관 대체 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에도 전의경 부대 22개 중대를 해체⁷⁾하였고, 경찰관 부대는 총 17개를 신설하기에 이른다. 2009년 6월 총 8개 경찰관 부대를 창설하였고, 2009년 11월 나머지 9개를 창설하였다. 이 중에는 여자경찰관으로만 구성된 부대도 있었고, 이들은 현재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으로 부대는 분당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다⁸⁾.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전의경이 감축되기로 되어있다. 아직 전의경

6) 전의경 부대는 13개 중대가 해체되었다.

7) 2009년의 경우, 부대 이외에 배치된 전의경의 구조조정을 마친 상태라 전의경 감축분을 소화하려면 2008년보다 전의경 부대를 많이 해체하여야 했다. 아울러, 전의경 인력이 감축되면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보충역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보충역 자원은 2009년부터 2천여 명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주로 경찰청, 교육기관 등의 시설경비, 단순 행정보조 업무 등의 임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8) 경찰관기동대는 서울지방청에 17개, 부산에 2개, 대구·인천·광주·대전·충남·전남·경남 지방청에 각 1개씩, 경기지방청에 10개 총 36개가 존재한다. 이중 여자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는 서울에 1개, 경기도에 1개 총 2개가 존재한다.

감에 따른 부대 해체가 정해지지 않는 않지만, 부대 창설계획은 설립되어 있다. 총 13개 경찰관 부대가 창설될 예정이며 이중 12개는 남자 경찰관으로 구성되고, 1개는 여자 경찰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약 30명 단위로 3개로 다시 나뉘어져 각각 다른 지방청에 소속될 예정⁹⁾이다.

2011년 이후는 전의경 감축과 관련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창설계획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경찰관 부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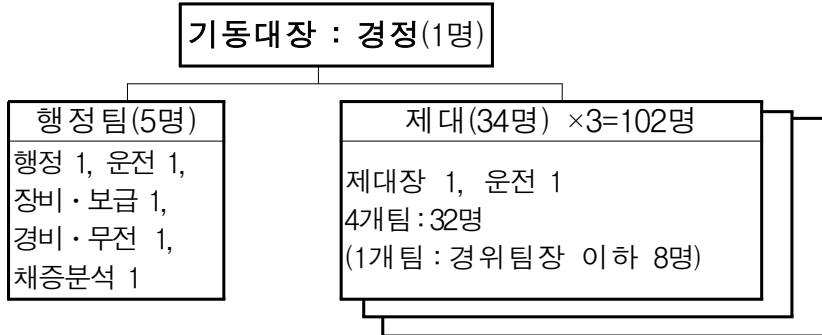
가. 편제, 임무, 인사

2008년 경찰관기동대가 창설되면서 청와대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 기동대도 역시 신설되는 기동대 편제와 같이 재편되었다. 현재는 경찰관 기동대가 통일적인 편제와 임무, 인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경찰관기동대 편제

9) 다소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2010년도에는 경찰관기동대가 서울에 4개 추가될 예정이며 부산대 구·광주에 각각 남자부대 1개, 여자부대 1개씩을 배치할 예정이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경북에 각각 한 개의 경찰관기동대가 신설될 예정이다. 2010년까지 경찰관 기동대 신설이 완료되면 강원지방청과 제주 지방청을 제외하고 16개 지방청 중에서 14개 지방경찰청이 모두 경찰관 기동대를 보유하게 된다.

<표 1> 경찰관기동대 편제표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경찰관기동대의 편제는 기존 전의경 부대의 편제와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의경 부대는 경감이 대장이지만, 경찰관기동대는 경정이 대장이다. 행정 사무를 보는 행정팀을 간소화 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제대에 인원을 많이 배정하였다. 또한, 제대장을 경감으로 구성하였다. 전의경 부대에서는 경위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한 계급씩 상향 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경찰관기동대 정원표

| 기동대 | 계 | 경정 | 경감 | 경위 | 경사 | 경장 | 순경 |
|-------|-------|----|----|----|----|----|----|
| 계 | 108 | 1 | 3 | 13 | 18 | 37 | 36 |
| 행정팀 | 6 | 1 | | 1 | 3 | 1 | |
| 3개 제대 | 102 | | 3 | 12 | 15 | 36 | 36 |
| 1개 제대 | 소 계 | 34 | | 1 | 4 | 5 | 12 |
| | 제대장 등 | 2 | | 1 | | 1 | |
| | 4개팀 | 32 | | | 4 | 4 | 12 |
| 1개팀 | 8 | | | 1 | 1 | 3 | 3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이 같은 편제는 제대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관기동대는 채증장비, 무전장비 등 각종 장비를 같이 운용하게 되는데 이 운용요원들은 제대내에 포함되어 있다.

총 108명의 경찰관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¹⁰⁾.

명칭에 대해 살펴보면, 기동대 아래 제대가 있고 제대 안에 8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된 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군대 용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2) 임무

경찰관기동대의 기본 임무는 집회시위관리이다. 이외에도 재난경비, 경호경비, 혼잡경비 등을 주 임무로 한다.

이외에도 지원 임무로서 생활안전·수사·교통 등 민생치안 지원 근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여경기동대의 경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집회시위관리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노약자·임산부·소아동반자 등의 보호관리와 단속, 체포 등의 임무를 우선 수행토록 되어 있으며, 홍보활동, 선무방송 등도 여경 기동대의 임무에 속한다¹¹⁾.

3) 인사

가) 대원의 선발

10) 경찰관기동대의 편제와 관련, 어느 정도의 인원이 적당한가에 대한 경찰청 단위에 검토가 있었다. 프랑스경찰관기동대의 경우 160명 내외로 운용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각각 100여명 내외로 우리와 유사하였다.

자세한 세계 각국의 경찰관 부대 편제 및 운영에 대해서는 경찰청 외사국 발행, '세계 각국의 경찰관 부대 편제 및 운영(2007.7)' 참조

11) 2008년 6월 서울청 기동본부에서 발행한 여경기동대 실무매뉴얼 참조

각 지방경찰청장은 경찰관기동대 대원의 인사권한자이다. 지방경찰청장은 기동대 조건부로 선발되는 신입순경이 차지하고 남은 경찰관기동대의 자리를 현직 경장이상 경정이하 경찰관으로 채워야 한다.

원칙적으로 ‘희망자’가 있으면, 우선 선발하되, 희망자로 부족할 경우 각 지방청장이 정한 경비부서 근무 순위명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령을 낸다. 또한, 기동대원을 선발할 때는 ‘선발일’을 기준으로 계급별로 기준 연령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각 지방청장은 지방청내의 인력수급 상황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연령을 초과하는 자의 선발도 가능하다.

<표 3> 경찰관기동대 선발시 연령기준

| 계 급 | 연 령 |
|-----------|-----------|
| 경 감 이 상 | 만 50세 이하자 |
| 경 위 | 만 46세 이하자 |
| 경 사 ~ 순 경 | 만 42세 이하자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다만, 임신부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등 신체이상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자와 원거리 근무자로 지방경찰청장이 제외 대상으로 인정한 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기동대 근무기간

각 지방청에서 순경으로 임용된 자가 최초 기동대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연속으로 2년을 채워야 한다. 그 밖에 일선에서 재직 중이다가 경찰관기동대에 선발되어 온 자들은 1년간 근무한다. 근무자는 희망에 의해서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관기동대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의 회수에는 제한

을 두지 않으며, 희망자는 기동대원 복무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칙으로만 보자면 경찰에 입문해서 퇴직때까지 기동대에서만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찰관기동대의 교체 및 복무연장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표 4> 경찰관기동대 심사대상별 인사위원회 설치 기준

| 경감 | 경위 | 경사 이하 |
|------------------------------------|----------------------------------|--------|
| 소속 기동본부 또는 지방경찰청(기동본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소속 기동단 또는 지방경찰청(기동단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경찰관기동대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훈령 제544호)

나. 근무 및 교육훈련

1) 근무 방법

경찰관기동대원은 5일간 일근근무 후 2일간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주5일제 근무). 또한, 휴무는 토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치안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요일을 휴무일로 지정이 가능하다. 가급적 2일을 연속하여 휴무로 지정하여야 하나 치안상황에 따라 비연속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휴무일에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하는 경우 대체 휴무일을 두어야 하며, 휴무를 주는 대신 경비동원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등으로 휴무를 보전해 주는 경우에도 예산의 지급한계를 넘어선 동원은 지양해야 한다.

경찰관기동대에는 탄력근무제를 적용한다.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

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출근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전일 업무종료 시간, 당일 근무시작 필요 시간 등 전체적인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날 늦은 시각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당일날 집회가 오후에 예정되어 있으면 출근을 당일 13시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찰관기동대도 역시 비상시 등을 대비하여 당번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부대수가 1,2개 밖에 없는 경우 체대별로 당번부대를 운용한다.

기타 부대내 당직근무, 직무대리, 자체경비, 복제, 휴가, 공상 등에 대해서는 일반 경찰관에 적용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부대단위 운용의 특성에 따라 일반 경찰서의 그것과 다를 뿐이다.

2) 교육 훈련

경찰관기동대는 매일 2시간이상 주1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근무 등으로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할 경우 주일 이상 집중 교육 훈련일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훈련은 기온에 따라 종류와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5> 혹서기 훈련 기준

| 온도 지수 | 훈 련 기 준 |
|-----------|--|
| 26.5℃ 초과시 | 기후에 순화되지 않는 신임 기동대원 훈련시 각별히 유의 |
| 29.5℃ 도달시 | 인체 발한(땀)·탈수로 위험 야기 가능, 구보 및 과중한 훈련 지양 |
| 29.5℃ 초과시 |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하에 야외훈련 조정 실시 |
| 31.0℃ 초과시 |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판단하에 야외훈련 제한 및 중지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표 6> 혹한기 훈련 기준

| 기 온 | 체감 온도 | 훈 련 기 준 | 비 고 |
|---------|------------|---------------------|---------------------------------------|
| 0~-6℃ | 0~-10℃ | 정상적인 야외훈련 가능 | |
| -6~-8℃ | -10.1~-18℃ | 야외훈련 내용·시간조정 가능 | 기 동 대 장 등 지휘관 관 단 하 에 시 행 가능 |
| -8~-12℃ | -18.1~-24℃ | 야외훈련을 실내훈련으로 전환 가능 | |
| -12℃ ~ | -24.1℃ ~ | 야외훈련 금지 및 실내훈련으로 대체 |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경찰관 재직자 중 경찰관기동대원으로 전입한 경찰관에게 집회시위관리 역량을 조기에 함양시키기 위해 적응교육을 1주일 간 실시한다.

<표 7> 경찰관기동대원 적응훈련 프로그램

| 과 목 | 시 간 | 교 육 내 용 |
|----------------|-----|---|
| 부대 소개 | 2 | ·전입 기동단 및 경찰관기동대 소개 |
| 집회시위관리 전술 | 7 | ·개인전술(봉술, 방패술) 및 팀·제대 단위 대형 훈련 |
| 집회시위 매뉴얼 교육 | 7 |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유형별 집회시위 현장 관리 요령 ·불법폭력 시위 대응 방안 |
| 정신 교육 | 5 | ·지휘관·외부강사 초빙 교육 ·인권과 안전, 법령절차 준수 등 |
| 체력 훈련 | 7 |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지구력 및 순발력 강화 |
| 근무 요령 | 7 | ·혼잡 경비 / 경호 경비 / 교통 근무 / 수사(채증·단속 포함) / 범죄예방 순찰요령 교육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이외에도 경찰관기동대원의 집회시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경찰관기동대원에 대한 체력검정을 실시한다¹²⁾. 이 결과는 개인별 기록카드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¹³⁾.

이 밖에도 경찰관기동대에서 운용 중인 장비나 전술에 특화된 교육도 실시하는데 특히 차단장비로 많이 쓰이고 있는 물포에 대한 운용요원 교육, 현장선무요원 교육, 현장 해정기법 교육, 채증 및 채증분석 요원 교육, 재난관리 교육, 경호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되고 있다.

다. 장비운용

1) 장비관리 일반

장비관리는 경찰장비관리규칙 및 경찰공무원급여품및대여품 규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모든 개인 장비는 1인1개 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차량 등 각종 장비는 상황에 따라 추가 배정이 가능하다.

각 부대별로 장비확보 기준을 정해 장비를 확보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여경기동대의 경우 별도로 장비확보 기준을 가지고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12)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제21조 참조

13) 첨부자료 1 : 경찰관기동대원 체력검정 기준표 및 첨부자료 2 체력검정 개인별 기록카드 참조

<표 8> 경찰관기동대 집회시위관리장비 확보기준

| 구 분 | 집회시위관리장비 | | | | |
|-------|------------------|---------------------|---------|-----------|--|
| | 장비명 | 확보 기준 | 비 고 | | |
| 개 인 비 | 보호복 | | 120 | | |
| | 방석모 | | 120 | | |
| | 경찰봉 | 단 봉(51cm 또는 71cm) | 120 | | |
| | | 장 봉(105cm 또는 120cm) | 60 | | |
| | 방패 | 소 형 | 120 | | |
| | | 대 형 | 60 | | |
| 차 량 | 승용 자동차 | | 1 | | |
| | 승합 자동차 (대형) | | 3 | | |
| | 승합 자동차 (중형) | | 1 | | |
| | 승합 자동차 (소형) | | 1 | | |
| | 화물 자동차 | | 1 | | |
| | 차벽 트럭 | | 1 | | |
| 화 학 비 | 근 접 분사기 | 중 형 | 3(개) | | |
| | | 소 형 | 12(개) | | |
| | 최 루 액 | | 720(리터) | | |
| | 방 독 면 | | 120(개) | | |
| | 최루탄 발사기 | | 9(정) | | |
| | 캐스탄 | KM 25 | | 15(발) | |
| | | KP1 / KP2 | | 각 200(세트) | |
| | | KP 3.5 | | 200(발) | |
| | | 다연발탄 | | 10(세트) | |
| | 캡사이신 분사기 | 휴대형(소형 또는 중형) | | 120 | |
| 등 짐 형 | | 12 | | | |
| 통 신 증 | 고 정 용 | | 1 | | |
| | 차 량 용 | | 1 | | |
| | 휴대용 무전기(TRS/VHF) | | 90 | | |
| | 페이징(VHF) | | 120 | | |
| | 비디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 | 각 1 | |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표 9> 경찰관기동대 기타 장비 확보기준

| 구 분 | 기타 장비 | | |
|----------|----------------|-----------|-----|
| | 장비명 | 확보 기준 | 비 고 |
| 일반 장구 | 외근요대 | 120 | |
| | 야광조끼 | 120 | |
| | 우의 | 120 | |
| | 수갑, 수갑집 | 각 120 | |
| | 방탄조끼 | 120 | |
| | 호신용조끼, 구난조끼 | 각 120 | |
| | 호신용경봉 | 120 | |
| | 교통신호봉 | 60개 | |
| 전투 장구 | 방탄헬멧, 탄대 | 각 120 | |
| | 탄입대 | 240 | |
| | 배낭 | 120 | |
| | 반합 | 120 | |
| | 수통, 수통피 | 각 120 | |
| | 야전삽, 야전삽피 | 각 120 | |
| | 의류대 | 120 | |
| | 배게, 베게피 | 각 120 | |
| | 모포, 매트리스 | 360 / 120 | |
| | 여름이불, 겨울이불 | 각 120 | |
| | 판초우의 | 120 | |
| | 위장포 | 120 | |
| 무기류 | 소총(K2, M16) | 108 | |
| | 권총(38구경) | 5(체대장 이상) | |
| | M203 유탄발사기 | 12(팀당 1정) | |
| | M60 기관총 | 12(팀당 1정) | |
| 기타 장비 | 소화포 / 휴대용 소화포 | 3 / 30 | |
| | 중형소화기 / 휴대용소화기 | 12 / 120 | |
| | 안전매트, H형 사다리 | 1 |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표 10> 여경기동대 장비확보 기준

| 구분 | 장비명 | 기준수량 | |
|------|------------------------------|--------------|------|
| 개인장구 | 보호복, 방석모, 야광밴드, 교통신호봉, 경적(줄) | 각 120 | |
| | 교통모교통혁대, 여경핸드백, 백색장갑 | 각 120 | |
| | 경찰봉 | 단봉 | 120 |
| | | 장봉 | 70 |
| | 방패 소형 | 120 | |
| 공용장구 | 메가폰 | 대1, 중 3, 소12 | |
| | 질서유지선(개당 10M) | 50 | |
| 차량 | 승용자동차(지휘용) | 1 | |
| | 승합자동차(대형) | 3 | |
| | 승합자동차(중형) | 1 | |
| | 승합자동차(소형) | 1 | |
| | 화물자동차(화물운송용) | 1 | |
| 화학장비 | 캡사이신 분사기 | 휴대형 | 120 |
| | | 등짐형 | 12 |
| | 근접 분사기 | 중형 | 3 |
| | | 소형 | 12 |
| | | 가스탄(Kp5탄) | 120발 |
| | 휴대용 소화기 | 120 | |
| 통신증 | 고정용 무전기 | 1(개) | |
| | 차량용 무전기 | 1(개) | |
| | 휴대용 무전기 | 90(개) | |
| | 페이징 | 120(개) | |
| | 비디오 카메라 | 1(개) | |
| | 디지털 카메라 | 1(개) | |
| 일반장구 | 외근요대 | 120 | |
| | 야광조끼 | 120 | |
| | 우의 | 120 | |
| | 수갑, 수갑집 | 각 120 | |
| | 방탄조끼 | 120 | |
| | 호신용조끼, 구난조끼 | 각 120 | |
| | 호신용경봉 | 120 | |
| | 교통신호봉 | 60개 | |
| 기타장비 | 소화포 / 휴대용 소화포 | 3 / 30 | |
| | 중형소화기 / 휴대용소화기 | 12 / 120 | |
| | 안전매트, H형 사다리 | 1 |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2) 장비별 관리

가) 기본장비

기본장비로는 개인장비, 최루장비, 채증장비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장비는 방석모, 보호복, 방패, 진압봉, 개인소화기 등이며 집중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부는 버스 등에 보관할 수 있다. 개인장비는 정기적으로 그 현황과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최루장비는 근접분사기, 유색분사기, 캡사이신분사기, 최루액, 최루탄 발사기, 방독면 등이 있으며 집중보관이 원칙이다.

채증장비는 각종 카메라와 편집기 등으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사용자가 개별 관리 및 운용이 가능하다. 채증활동을 할 때에는 보호조와 함께 움직여야 하며 각종 보호장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차량

경찰관기동대가 운용하는 차량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차벽트럭 물포 등이 있다. 물포는 사용명령권자를 지정하고, 사용요건도 엄격할 뿐 아니라, 그 절차나 살수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 통신장비

통신장비로는 무전기,페이징 등이 있다. 통신장비는 부대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통신장비의 피탈이나 분실시에는 사안을 고려하여 수배, 통보, 보고하여야 한다.

라) 작전·대테러 장비

작전 및 대테러 장비로는 방탄헬멧, 탄대, 탄입대, 배낭, 수통(피), 야전삽(피), 반합, 의류대, 베게(피), 모포, 매트리스, 이불, 판초우

의, 위장포 등이 있다. 이러한 전투장비는 통합방위작전 상황 등 발생시에 사용하며 각 부대에서 집중 관리한다.

특히, 무기는 소총과 권총, 유탄발사기, 기관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의 일반 무기관리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라. 경찰관기동대 복지

일반 경찰관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는 당연히 경찰관기동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부서와는 다른 경찰관기동대 복지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청사와 급식이다.

1) 청사

경찰관기동대의 청사는 기준모형을 정해 놓고 있다. 청사를 건축할 경우 최대한 기준 모델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청사는 그 자체내에서 숙영과 휴식, 운동 등이 가능하도록 기능적인 측면을 갖추어 놓고 있다.

단, 경찰관기동대는 원칙적으로 비숙영 일근근무 체제이다. 전의경 숙소는 생활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사무실형 청사가 청사의 기준 모델이다. 다만, 집회시위관리 업무의 특성인 다른 지역으로의 출동하여 숙영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숙영 공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¹⁴⁾.

또한 채증분석실을 각 부대마다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체력단련장, 목욕탕 등도 구비하여 경찰관기동대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14) 프랑스, 독일에도 경찰관만으로 구성된 기동대가 있다. 이들 기동대 역시 일근 체제이며 당직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사무실은 숙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 사무실에는 캐비닛과 책상만이 존재하고 침대는 없다. 당직 부대의 경우도 24시간 비상대기하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있다.

<표 11> 경찰관기동대 청사 기준모델

| 총 1,980㎡(600평) (실소요면적+공용면적) | | | | |
|-----------------------------|----------|------------|---------|----------|
| 실소요면적(70%) 1,386㎡(420평) | 제대사무실 | 297㎡(90평) | 세면장 | 20㎡(6평) |
| | 생활실 | 478㎡(145평) | 샤워, 목욕탕 | 66㎡(20평) |
| | 행정반 | 52㎡(16평) | 화장실 | 33㎡(10평) |
| | 식당 | 59㎡(18평) | 대장실 | 39㎡(12평) |
| | 휴게실 | 49㎡(15평) | 장비창고 | 49㎡(25평) |
| | 대회의실 | 115㎡(35평) | 채증분석실 | 33㎡(10평) |
| | 체력단련장 | 66㎡(20평) | 문서고 | 26㎡(8평) |
| 공용면적(30%) 594㎡(180평) | 복도, 계단 등 | | | |

출처 :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2) 급식

경찰관들의 급식은 당직 등 근무 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평상시 중식 등의 급식은 자비 부담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동대의 경우 단체활동을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평상시 중식의 급량비도 지원하고 있다. 전의경

부대와 같이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전의경 부대와 차이점은 급량 형태가 각 부대의 실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경찰관기동대가 집중되어 관리되는 곳은 위탁급식 등을 실시하고 한 개 부대 단위인 곳에서는 도시락 업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3. 경찰관기동대 운용 현황과 문제점

현재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부대를 제외하고 총 34개의 경찰관기동대가 운용 중에 있다. 각 지방경찰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주로 집회시위관리 업무에 동원이 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혼잡, 재해경비 등 경비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나 경비 업무 수요가 없는 경우나 민생치안 업무에 투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각종 단속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아울러 경호 업무에도 자주 동원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운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한다.

가. 집회시위관리, 혼잡, 재해경비 업무

경찰관기동대는 집회시위관리가 주 임무이다. 일단 출동지시가 하달되면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회시위의 목적, 집회자의 성향, 예상 상황, 주변 지리, 필요 장비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출동해서 현장에서는 검문검색과 채증활동, 순찰활동을 행하고 집회시위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이에 대한 진압을 담당한다. 혼잡경비의 경우는 행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가 시작되어 종료될 때 까지 각종 안전상황 발생에 대비해 근무하게 된다. 재해경비는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평상시 훈련을 통해 이를 숙지한다.

2009년 8월 경찰청에서는 경찰관기동대 대장, 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없는 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에서 경찰관기동대의 원활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교육훈련 부족이 우선 문제시 되었다.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각종 집회 시위 상황에 동원되어 최일선에 배치되지만, 각종 지원근무 등으로 인해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경찰관기동대운영규칙이나 업무편람 등에는 주 1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종 지원업무는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체계(프로그램 등)가 없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의 경우 교육효과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재직자 발령시에도 재직자들의 훈련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물포, 차벽트럭 등 각종 특수장비가 경찰관기동대에 배치되어 활용되고 새로이 개발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운용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나. 각종 단속 등 민생치안 근무 지원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주임무의 수행이나, 휴무,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방경찰청장이 민생치안 지원 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각종 사행성업소 단속, 성매매업소 단속 등에서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건물 정보, 단속관련 법규, 단속요령 등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수사나 형사 업무의 지원시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지원근무로 인해 교육훈련 시간이 부족하여 막상 주 임무인 집회시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기동대원들이 과도한 지원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또한, 각종 지원업무에 동원되다 보면 숙지해야 할 지식 등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다. 복무, 인사, 복지 등

2008년 처음 신설, 재편된 경찰관기동대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모든 업무 자체가 새로운 것일 수 있어, 인사나 복무와 관련되어 정착되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경찰관기동대원 인사과 관련, 현재는 경정을 기동대장으로 하고 각 제대장을 경감으로 발령하고 있다. 각 부대마다 경감을 3명을 발령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경과제 등으로 인해 경비부서에 근무해야 하는 경감 인력이 부족하여 서울청의 경우는 경위가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경위가 경감업무를 직무대리를 장기간 할 경우 부대 기강 등 부대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서울청 경감의 경우 기동대 1년, 경찰서 1년 이렇게 매년 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청의 경우도 수사경과제를 제외한 경감급 여자 경찰관이 부족하여 경감급 제대장의 나이가 많아 작전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경찰관기동대장은 현재 경정이다. 경정이 약 100여명에 달하는 경찰관

15) 2009.8 경찰관기동대원간담회 회의 결과 등 참조

들을 지휘·관리하고 있지만 표창권이 없어 부대원의 사기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경찰에서 경정 계급이 표창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김포공항경찰대장, 22경호대장 등이다.

여경기동대는 현재 서울에 1개, 경기청에 1개 있다. 현재 경찰관기동대의 각종 장비는 남자경찰관을 위주로 구성되었다. 여경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감량 등의 장비개선을 통해 여경 특성에 맞는 장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찰관기동대원의 경우 일근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야간이나 휴일에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경찰관기동대원의 근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시간외수당과 경비동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9년 8월 경찰청 간담회에서 일부 기동대원이 각종 수당 등이 근무에 비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야간집회가 많아질 것이 예상되고 있다. 경찰관기동대원의 시간외수당, 경비동원수당 등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Ⅲ. 경찰관기동대 효율적 운용방안

앞서 경찰관기동대의 현황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찰관기동대의 운용적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자고 한다.

1. 철저한 집회시위 분석 및 대비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최근 들어서도 아직도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시위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9년만 하더라도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노조의 점거농성 등 끊임없이 있어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4대강 추진, 언론관련 법, 노동문제, 개인이나 단체간의 이익의 다툼 문제 등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9월 야간옥외 집회 금지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야간옥외집회가 늘어날 것도 예상이 된다.

이러한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경찰관기동대는 출동하기 전,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지금도 사전 대책회의 등을 통해 사전 지식을 습득하지만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찰관들은 전의경과는 달리 현장에서 단독으로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다.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서는 법 집행자가 되는 것이다.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장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¹⁶⁾.

이제 집회시위는 인력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하다. 전의경이 감축되고

16) 예를 들어, 2009년 8월, 기동대원들과의 간담회시 ‘격대장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작전팀 운용이 필요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있으며 현장에서도 시위대에 비해 경찰관이 부족하다. 경찰에서는 전의 경을 이용한 인력 위주의 집회시위 대응방법을 최근까지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전술을 바꿔야 한다. 공권력의 위상이 강한 선진국에서는 경찰관에 대해서 공격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력보다는 장비 등에 의한 전술을 개발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민생치안업무에 무리한 동원 지양

앞서 언급되었지만, 경찰관기동대가 경비업무 및 훈련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로 민생치안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민생치안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경찰관기동대의 주임무가 경비업무이다. 경비업무에 있어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무리한 동원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대규모 경비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경찰관기동대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평상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변수가 발생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민생치안에 동원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대부분 ‘대규모 상황은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민생치안 업무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업무에 동원하고 경비 업무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훈련을 통해 단련된 부대만이 실제 현장에서 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3. 교육훈련 강화 및 업무지원프로그램 개발, 운용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월70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한다. 하지만, 경찰관기동대가 모두 훈련시간 부족과 훈련프로그램 미비, 훈련체계 부족 등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경찰관기동대 훈련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 두 번째로 훈련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화하지 않으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훈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체계적인 훈련교범을 개발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같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경비, 대테러, 재난 등 경비상황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을 통해 경찰관기동대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관기동대의 역량은 서울지방경찰청의 기동본부에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훈련교범과 기술들이 기동본부를 통해 나오고 있다. 2010년이 되면 제주와 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경찰관기동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여타 지방청의 경찰관기동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울청에서 지원 또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각종 상황에서 경찰관이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많이 있다. 경찰관기동대는 경비, 수사, 생활안전 모든 업무에 동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을 다 알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상황 동원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지식을 따로 관리, 교육, 지원해주는 전문적인 팀을 운용하는 것도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4. 장비 개발, 운용

인류의 역사는 첨단 장비를 갖추음으로서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다. 경찰관의 법집행도 장비를 통해 더욱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관기동대에는 많은 장비들이 개발되어 운용되고 있다. 차벽트럭, 물포, 각종 채증장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장비가 개발되면 될수록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위대의 장비도 역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관기동대의 장비 개발과 운용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경찰관기동대에서도 테이저 건, 전자빔발사기, 고무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과격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최루탄의 사용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 중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발견할 수 없다¹⁷⁾. 우리도 장비를 통한 무관용 원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卜’ 자형 경찰봉을 집회시위 현장에서 운용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폭력시위자를 진압하는 좋은 장비로 알려져 있다. 이 장비의 상용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기동대원의 개인장비도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여경기동대원이 많아지면서 이에 맞는 장비의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장비의 운용과 개발에 필요한 운영요원도 시급히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최루탄, 고무탄, 스프레이 등을 소지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집회시위에 대비하면서 총기까지 휴대하고 있다.

5. 기타 복무관련 개선 필요사항

앞서 경찰관기동대 현황을 살펴보면, 복부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감급의 경비부서 교체 주기 문제, 경정 기동대장의 표창권 문제, 시간외수당·경비동원수당 등 지급관련 문제 등이 그것이다.

경감급의 경비부서 교체주기가 빨라지면서 경감급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경기청의 경우 여경기동대에 배치할 경감급의 연령이 많아 부대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사운영체제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인 수사경과제를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적용을 유예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수사경과제의 운용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경감, 경정의 경찰관기동대의 발령은 예외로 두는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동대에 근무할 수 있는 연령기준을 높이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동성이 필요한 업무의 특성상 고령의 경찰관이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결책으로 생각되어 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기동대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기동대를 선호부서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경감, 경정이 계속하여 기동대에 잔류하기를 원할 것이고 교체 주기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것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안¹⁸⁾일 뿐이다. 당장, 교체주기가 짧아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경과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8)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청 여경기동대의 연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경기동대’라는 개념을 없애는 것도 좋을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 경찰관기동대는 여자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별도로 여경만 모아서 부대를 운용하지는 않는다. 여자와 남자가 동일하게 경찰관기동대의 부원으로서 같이 근무하고 식사하고 휴식을 취한다. 우리 경찰관기동대도 남녀 구분없이 체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면 여경기동대만의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정 기동대장의 표창권 문제는 기동대장의 지휘권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경정급 지휘관이나 참모 등의 형평성 등의 문제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수당 지급 문제는 현실적인 근무시간과 수당지급액과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경찰관기동대 홍보 강화

2008년 7월 경찰관기동대가 창설되었을 때, 일부 언론에서 ‘백골단 부활’이라며 비난하였다. 경찰관기동대는 1980년대의 속칭 ‘백골단’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일부 언론 등에서 단지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를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찰관기동대에 대해 수시로 홍보하여 국민들을 경찰관기동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일은 무엇이며,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등등 경찰관기동대 특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백골단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IV. 결 론

전의경이 감축되면서 대체되는 경찰관으로 2008년부터 경찰관기동대가 경찰에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2010년까지 49개의 경찰관기동대 전국에 창설되어 활동을 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에는 경찰관기동대의 설립 배경과 연혁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경찰관기동대의 설립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경찰관기동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집회시위관리 분석, 민생치안 업무 동원의 지양, 교육훈련 강화, 장비의 개발과 운용, 기타 복무와 관련된 개선사항 등을 알아 보고 마지막으로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시행 초기인 만큼 경찰관기동대의 기초를 잘 다져 향후 선진 경찰의 밑거름이 되어 줄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정착되어야 할 제도나 시책들이 있다.

제시된 운용방안을 위주로 꼼꼼히 챙겨나간다면 경찰 조직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경찰관기동대가 경찰관들이 선호하는 보직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참 고 문 헌

- 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업무편람, 2009.9
- 경찰관기동대 운영규칙, 경찰청 훈령 제544호(2009.7)
- 경찰청, 경찰반세기 그 격동의 현장, 2001
- 정부합동브리핑,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2+5전략, 2007.2
- 경찰청(2009), 경찰백서, 2009
- 경찰청 외사국, 세계각국의 경찰관 부대 편제 및 운영, 2007.7
- 경찰청 외사관리관실, 각국의 집회시위 문화 비교검토, 2006.1
- 경찰청 외사국, OECD 등 주요 외국의 불법 집회시위 대응 현황 자료집, 2009.2
- 장전배, 집회시위문화 특징 및 전망, 경찰의 역할, 2007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발표문, 2007.7
- 경찰청 경비국, 09년 상반기 경찰관부대 창설계획(2009.5)
- 경찰청 경비국, 경찰관 모집 및 지방청별 부대배치 계획(2009.6)
- 경찰청 경비국, 경찰관기동대 간담회 회의 결과(2009.8)
- 경찰청 경비국, 선진유럽 3국 경비 기동경찰 운영사항 보고(2007.9)

첨부자료 1 : 경찰관기동대원 체력검정기준표

1. 남자

| 종목 (단위) | 등급 (점수) | 연 | | | | 령 | | | |
|--|------------|-----------|-----------|-----------|-----------|-----------|-----------|-----------|-----------|
| | | 25이하 | 26~30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이상 |
| 1.2 km 달 리 기 (분:초) 미 달 | 1급(25점) | 4:30이하 | 4:40이하 | 4:50이하 | 5:00이하 | 5:10이하 | 5:20이하 | 5:30이하 | 5:40이하 |
| | 2급(20점) | 4:31~5:00 | 4:41~5:10 | 4:51~5:30 | 5:01~5:40 | 5:11~6:00 | 5:21~6:20 | 5:31~6:40 | 5:41~7:00 |
| | 3급(15점) | 5:01~5:40 | 5:11~5:50 | 5:31~6:10 | 5:41~6:30 | 6:01~6:50 | 6:21~7:20 | 6:41~8:00 | 7:01~8:40 |
| | 4급(10점) | 5:41~6:30 | 5:51~6:40 | 6:11~7:00 | 6:31~7:20 | 6:51~7:50 | 7:21~8:20 | 8:01~9:00 | 8:41~9:50 |
| | 미 달 | 6:31이상 | 6:41이상 | 7:01이상 | 7:21이상 | 7:51이상 | 8:21이상 | 9:01이상 | 9:51이상 |
| 팔굽 혀 펴기 (회/ 2분) 미 달 | 1급(25점) | 71이상 | 66이상 | 62이상 | 58이상 | 53이상 | 46이상 | 43이상 | 39이상 |
| | 2급(20점) | 61~70 | 57~65 | 53~61 | 49~57 | 45~52 | 38~45 | 35~42 | 31~38 |
| | 3급(15점) | 51~60 | 47~56 | 44~52 | 41~48 | 37~44 | 30~37 | 27~34 | 23~30 |
| | 4급(10점) | 40~50 | 38~46 | 36~43 | 33~40 | 29~36 | 22~29 | 19~26 | 15~22 |
| | 미 달 | 39이하 | 37이하 | 35이하 | 32이하 | 28이하 | 21이하 | 18이하 | 14이하 |
| 윗몸 일으 키기 (회/ 2분) 미 달 | 1급(25점) | 81이상 | 76이상 | 71이상 | 66이상 | 61이상 | 56이상 | 51이상 | 46이상 |
| | 2급(20점) | 71~80 | 66~75 | 63~70 | 57~65 | 53~60 | 47~55 | 42~50 | 38~45 |
| | 3급(15점) | 61~70 | 56~65 | 53~62 | 49~56 | 44~52 | 39~46 | 34~41 | 30~37 |
| | 4급(10점) | 50~60 | 48~55 | 45~52 | 40~48 | 35~43 | 30~38 | 26~33 | 22~29 |
| | 미 달 | 49이하 | 47이하 | 44이하 | 39이하 | 34이하 | 29이하 | 25이하 | 21이하 |

- 100점만점(기본점수 25점), 총60점 미만 및 종목별 미달자는 불합격
- 1.2km 측정시 초 미만 단위 측정수치는 버림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는 2분간 실시한 총회수를 측정

2. 여자

| 종목 (단위) | 등급 (점수) | 연령 | | | | | | | |
|------------------------------|------------|-----------|-----------|-----------|-----------|-----------|------------|------------|------------|
| | | 25이하 | 26~30 | 31~35 | 36~40 | 41~45 | 46~50 | 51~55 | 56이상 |
| 1.2km 달리기 (분:초) | 1급(25점) | 5:50이하 | 6:00이하 | 6:10이하 | 6:20이하 | 6:40이하 | 6:50이하 | 7:00이하 | 7:20이하 |
| | 2급(20점) | 5:51~6:40 | 6:01~6:50 | 6:11~7:00 | 6:21~7:10 | 6:41~7:20 | 6:51~7:40 | 7:01~7:50 | 7:21~8:00 |
| | 3급(15점) | 6:41~7:40 | 6:51~7:50 | 7:01~8:00 | 7:11~8:20 | 7:21~8:40 | 7:41~9:00 | 7:51~9:10 | 8:01~9:30 |
| | 4급(10점) | 7:41~8:50 | 7:51~9:00 | 8:01~9:10 | 8:21~9:30 | 8:41~9:50 | 9:01~10:00 | 9:11~10:20 | 9:31~10:30 |
| | 미달 | 8:51이상 | 9:01이상 | 9:11이상 | 9:31이상 | 9:51이상 | 10:01이상 | 10:21이상 | 10:31이상 |
| 팔굽혀 펴기 (회/ 2분) | 1급(25점) | 35이상 | 33이상 | 31이상 | 29이상 | 26이상 | 23이상 | 19이상 | 15이상 |
| | 2급(20점) | 28~34 | 27~32 | 25~30 | 24~28 | 21~25 | 18~22 | 15~18 | 11~14 |
| | 3급(15점) | 23~27 | 22~26 | 20~24 | 18~23 | 16~20 | 13~17 | 11~14 | 8~10 |
| | 4급(10점) | 19~22 | 18~21 | 16~19 | 15~17 | 13~15 | 10~12 | 9~10 | 6~7 |
| | 미달 | 18이하 | 20이하 | 15이하 | 14이하 | 12이하 | 11이하 | 9이하 | 5이하 |
| 윗몸 일으 키기 (회/ 2분) | 1급(25점) | 67이상 | 64이상 | 62이상 | 59이상 | 56이상 | 53이상 | 50이상 | 48이상 |
| | 2급(20점) | 55~66 | 53~63 | 51~61 | 48~58 | 45~55 | 41~52 | 39~49 | 37~47 |
| | 3급(15점) | 45~54 | 43~52 | 40~50 | 37~47 | 34~44 | 30~40 | 28~38 | 26~37 |
| | 4급(10점) | 35~44 | 33~42 | 30~39 | 27~36 | 24~33 | 19~29 | 17~27 | 16~25 |
| | 미달 | 34이하 | 32이하 | 29이하 | 25이하 | 23이하 | 18이하 | 16이하 | 15이하 |

- 100점만점(기본점수 25점), 총60점 미만 및 종목별 미달자는 불합격
- 1.2km 측정시 초 미만 단위 측정수치는 버림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는 2분간 실시한 총회수를 측정

첨부자료 2 : 체력검정 개인별 기록카드

| | | | | | |
|------------------|-------------------|----------------|----------------|----------------|----------------|
| 사 진 | | | | | |
| 소 속 | | 계 급 | | 성 명 | |
| 생년월일 | | 혈액형 | | 무 도 | 종 별 |
| | | | | | 단 급 |
| 검 정 일 자 (연 령) | . . . (만 세) | . . . (만 세) | . . . (만 세) | . . . (만 세) | . . . (만 세) |
| 1.2km 달리기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 팔굽혀펴기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 윗몸일으키기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 총 점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급(점) |
| 불 참 사 유 | | | | | |
| 검 인 관 | 소 속 계 급 성 명 | 인 | 인 | 인 | 인 |

- 총점 90점 이상 : 1급, 80점 이상 : 2급, 70점 이상 : 3급, 60점 이상 4급, 60점 미만 : 불합격(부적격자 처리)
- 종목별 미달자는 부적격자 처리

책임연구보고서 2009-26

경찰관기동대 효율적 운용 방안 연구

발행일 : 2009년 12월 24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